

세대주 신고에 의한 공고

아래와 같이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7년 6월 30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지연신고사항
반 * *	손 * * 1985-09-21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09-20, 102동 702호(신천동, 협성노블리스)	무 단 전 출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8조 및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주민등록(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)이 처리되며,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김 경 혜 문의전화 : 052-241-8313)

2017년 6월 14일

농 소 1 동 장

